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8. 8 선고 2021가단13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14.

판 결 선 고 2022. 8. 8.

주 문

1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지분에 관하여 2016. 7. 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D에게,

가. 별지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별지1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. 1. 16. 접수 제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그 내용 중 ‘별지 목록’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하고, 원고는 청구취지에
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추가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영일

별지